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5081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허재혁, 김민정, 이승은

피고1. B

2. C

피고 1, 2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父) D

3. E

변론 종결2019. 4. 18.

판결 선고2019. 5. 2.

주 문

1. 피고 E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16분의 3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2. 26. 접수 제89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16분의 27.1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2. 26. 접수 제8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5. 19. 접수 제3248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가)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 C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실제로는 서울 중구 F, G, H 등 세 필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인 'I 대 48.6m²'에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표제부 '건물의 표시'에 "서울 중구 I건물 J호"로 기재된 상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I 지상에는 1965. 12. 31. 원고 소유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점포 1층 26.12m², 2층 41.95m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달리 피고 B, C이 원고 소유인 I 대지 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소유·유지할 권원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B, C은 I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E을

대위하여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업

별지